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52 (2022. 3. 7 ~ 3. 11)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건설/부동산	①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후 신도시 재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등.
	ESG 금융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함.
국회 계류안	중대재해	③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자 발생 시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공포 법령	기업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입법/ 행정예고	ESG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송석준 (국민의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 1기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건물 및 인프라의 노후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성능의 보완과 향상 등 전반적인 도시재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신도시의 기업유치 등 일자리 증가가 없이 2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서울외곽의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기존 광역교통망의 과부하까지 심화되고 있음. 그 결과 서울까지 출근에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집단 노후화로 등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재생이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건축규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해 자력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 더욱이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보다 지리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3기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으로 1기 및 2기 신도시 자체가 회생불능으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광역교통망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낙후된 1기 및 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며,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에 대한 우선 분양,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데일리 22.03.01. 송석준 의원 '노후 신도시 재생법' 발의…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31766632259056&mediaCodeNo=257&OutLnkChk=Y	22.02.28.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신도시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사업의 개요 및 목표, 교통시설현황 등이 포함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라. 시·도지사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 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 내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자. 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 인근지역 또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물량의 일정부분을 확보하는 등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주민의 원활한 이주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함(안 제23조). 카. 건축규제의 완화로 증가하는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노후신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P2L0Z2C2K2X1Q6A4W9W1P7B9L4M2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후위기가 금융 분야에서도 구조적인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목받는 가운데, 프랑스는 2015년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제정을 통해 상장기업, 은행, 기관투자자 등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분야의 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었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장기업, 은행 등이 기후위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실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금융 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59조).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A2Y0M2P0X9A1P4Q3J9C3S7O6Q6G6		22.02.28. 제안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건설안전특별법안	■ 건설공사는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사 목적물(건축물·도로·철도 등)이 다양하며,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건설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8조). 나.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자는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안 제15조).	중앙일보 22.03.01. 건설업체 85% "건설안전특별법, 중복처벌…제정 반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020	21.06.16. 제안 21.12.27.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라.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함(안 제31조). 마.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34조 및 제35조). 바.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W1M0Y6K1G5F0J9F0S8H5E9W7F0O9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현행법은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변경등록의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변경등록과 관련된 물류창고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각종 등록 등의 절차규정에 기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그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과 관련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출처:https://www.law.go.kr/법령/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21.12.07. 일부개정 22.03.08. 시행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개정이유 열분해를 통한 폐합성수지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폐기물 관련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 필요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증금제 대상 1회용컵 수집·운반 규제 완화(안 제9조, 제15조의2, 제66조 및 [별표 5]) - 1회용컵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완화 - 1회용컵을 지자체와의 대행계약 없이 수집·운반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 -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가 배출하는 1회용컵을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완화 - 1회용컵 수집·운반 시 적재 기준을 완화(밀폐형 압착·압롤차량→밀폐형 덮개차량)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개선(안 제10조) - 임시보관장소를 옥내화한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선별·절단을 허용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규제 완화(안 제17조의2) - 변경신고 사유 중 상호·소재지 변경, 처리계획 변경 등 실제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나 성상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 라. 왕겨·쌀겨 규제 완화(안 제18조, 제20조 및 [별표 4]) - 왕겨 및 쌀겨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인계·인수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사료로서 관리되는 쌀겨의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	한국일보 22.03.03. 코로나로 폭증한 폐플라스틱, 기름으로 재활용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0315140000027?did=NA	22.03.04. ~ 22.04.13.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마. 열분해(가스화) 재활용시설 사용신고 및 검사 등 규정 마련(안 제41조, [별표 10], [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 - 열분해(가스화)시설을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의 하나로 별도 분류하게 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 및 검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관련기준을 정비 -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신고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재설정 바. 폐기물 법정교육 강화(안 제50조) - 교육 대상자들의 최초 교육 시점* 및 교육 주기**를 명확화 *1년 또는 6개월 이내 ** 3년 또는 1년마다 사. 폐기물 발생·처리 보고서 작성방법 구체화(안 제60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이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명시 아. 폐목재 분류 간소화 등(안 [별표 4]) - 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14종)되어 실제 현장에서 명확한 구분이 곤란했던 폐목재의 분류를 5종으로 간소화 - 폐목재의 범위에서 '연료용 또는 목재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 간벌, 숲가꾸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임목부산물'을 제외 자. 커피박·폐버섯배지 재활용 확대(안 [별표 4], [별표 4의3], [별표 5의3]) - 폐기물 세부분류에 커피박 및 폐버섯배지를 신설하고, 이를 화력·열병합발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차. 열분해(가스화) 재활용 유형 추가(안 [별표4의2]) -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이용하는 유형(R-3)에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경우를 추가 - 열적 처리방법으로 기체 연료를 만드는 경우에 수소를 만드는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 카. 폐윤활유 및 그 밖의 폐유 재활용 확대(안 [별표4의3], [별표5의3]) - 폐윤활유 및 그 밖의 폐유를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타. 폐합성수지류의 재활용 확대(안 [별표4의3], [별표5의3]) - 폐합성수지류,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열분해 등 공정을 거쳐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재활용 확대(안 [별표 4의3], [별표 5의3])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성토재, 복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하.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추가 및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 4의3], [별표 5의3]) - 음식물류폐기물을 열적 처리방식으로 연료를 제조하거나, 종이·금속 등 원료물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추가 - 음식물류폐기물을 유기탄소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총휘발성유기산'은 기준은 삭제하고, 탄소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cr)'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정비 거. 폐의류,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 등 재활용 확대(안 [별표 4의3], [별표 16]) - 폐의류(생활폐기물)를 단순 선별 등을 통해 원형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추가 및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완화 - 폐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을 단순 수선·세척 등을 통해 다른 용도로 재사용(업사이클링)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추가 및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완화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너. 중간가공폐기물 등 수집·운반 차량 규제 완화(안 [별표 5]) - 환경 위해 가능성이 적은 일부 폐기물(보증금제 대상 용기 등)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증이 발급되지 않은 차량으로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중간가공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타인명의 차량 대상 수집·운반증 발급 및 임시차량 수집·운반증 발급을 허용 더.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안 [별표 5])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구체적 처리 기준* 마련 *가연성·불연성 등 구분하여 처리, 폐기물배출자 신고, 시설기준 등 고시 사항 준수 의무 등 러. 폐합성수지의 식품 용기 재활용 세부기준의 근거 마련(안 [별표 5의3]) - 식품 용기의 원료로 사용하기 적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활용기준을 고시토록 근거규정을 마련 머. 유기성오니 가공 연료 사용비율 상한 폐지(안 [별표 5의3]) - 유기성오니를 화력 또는 열병합 발전 연료로 사용시 총 연료 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토록 한 상한 규정을 폐지 버. 매체접촉형 재활용 원칙 명확화(안 [별표 5의4]) - 토양에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1, R-7-2, R-7-6)의 경우 재활용 대상 부지 외의 범위에 대해서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도록 적용대상 지역을 명확화 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기준 개선(안 [별표 5의6]) - 폐기물 유해특성 항목 중 용출독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시험·분석 장비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시험·분석이 가능한 특정 기관들에 의뢰할 수 있도록 완화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어.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시 조치사항 명확화(안 [별표 6], [별표 8]) – 폐기물처리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를 '계량시설 인근'에서 '계량시설과 진입로'로 명확화하고, 해당 영상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응당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과토록 명시 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최소규모 상향(안 [별표 7])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시 최소규모 상한을 높여 처리 효율성 확보(1톤/hr→2톤/hr) 처.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폐기물 관리 개선(안 [별표 8], [별표 11])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불연물은 공정을 거친 것으로 간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불연물을 반드시 소각해야 할 필요는 없음 – 폐기물 처분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위탁받도록 명시 커. 선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강화(안 [별표 9], [별표 11]) – 선별시설은 세척수 등이 외부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바닥기울기를 2%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 – 선별시설에 플라스틱 광학선별기를 설치하고, 재활용품 반출 후 12시간 내 실내작업장을 청소하고 청소실적관리부를 작성·보관토록 의무화 터. 기술관리인 적격대상 확대(안 [별표 14]) –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열회수시설 기술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에너지관리기사 추가 퍼. 음식물류폐기물 재사용 가축 먹이 관리 강화(안 [별표 16]) –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 *허가 대상으로 변경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허. 행정처분기준 기본원칙 완화(안 [별표 21])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에 1/2 가중하여 처분토록 완화 - 위반횟수 산정시 위반행위 발생일 대신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또는 2년간 위반행위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완화 고. 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실적보고 서식 불일치 정비(안 [별지 제49호서식]) - 배출자신고 서식에 기재토록 한 폐기물 '구분'란을 배출처리 실적보고 서식에도 추가하여 서식간 불일치를 해소 노. 잔재물의 정의 추가(안 [별지 제49호서식]) - 폐기물배출자, 처리업자, 재활용업자의 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란에 잔재물의 정의 추가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7645?pageIndex=2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한국경제][칼럼]고용부의 묘한 중대재해 통계(2022.03.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30702761

주요내용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를 분석해 법 시행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 24건·2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8건·18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고용부는 최근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집계와는 다른 통계를 내놓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함.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와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공단의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공단의 집계가 부정확했다면 고용부가 산하기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임. 고용부의 산재 사망사고 통계가 정확하다고 해도, 법 시행 초기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 기업이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말자'며 공사를 일시적으로 멈췄기 때문에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음. "중대재해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면 국내 모든 생산공장과 건설 현장을 중단시키면 된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민감한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다 보니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난무했고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한겨레][사설]현대제철 또 '쇳물 사망', 중대재해법 취지 깨닫게 해야(2022.03.07.)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33429.html

주요내용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도금용 금속 액체가 끓고 있는 대형 용기 속으로 추락해 숨짐. 당진제철소는 2010년부터 해마다 사망 사고가 일어나 11년 동안 모두 30명이 숨진 악명높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임. 이 죽음은 '구조적 죽음'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번 사고가 '2인 1조 작업' 규칙을 어기고 최소한의 안전조처도 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사고 당시 폐회로텔레비전을 보면, 숨진 노동자가 안전난간도 없는 비좁은 공간에서 홀로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모습이 기록돼 있다고 함. 노조는 올해 들어서도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지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고 주장함. 사실이라면 회사뿐 아니라 해당 노동청에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함. 더구나 당진제철소는 지난해 두차례나 산업안전 감독을 받았는데도 현장의 문제점이 적발되지 않았는데, 노동부는 감독할 때는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었지만 실제 작업할 때는 치운 것으로 보고 있음. 감독관청을 기만했다면 산업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후속 조처가 뒤따라야함. 현대제철은 상시고용 인력이 1만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현대 제철은 대표이사 대신 당진제철 소장을 경영책임자로 내세우려 한다는 얘기가 들림. 이런 기업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제대로 깨닫게 해야 함.

[서울신문][사설]'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감독 소홀 노동부 책임도 크다(2022.03.0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04500164&wlog_tag3=naver

주요내용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450도로 끓는 도금용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지난해 5월에는 고용노동부가 2주 동안 당진제철소는 물론 현대제철 본사까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지만 이번 사고로 여전히 근본적인 개선과는 동떨어져 있는 현실이 거듭 확인됨. 비슷한 유형의 산재 사망이 반복되는 열악한 작업 환경인데도 산업 안전의 책임을 가진 기업과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가진 정부가 제대로 된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이런 중대재해를 근절하지 못하는 요인임. 이렇게 중대 재해가 고질적으로 반복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소홀 책임도 함께 물어야함. 개별 사고의 원인을 지적하는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등으로만 종결되는 특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강구해야 함.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건설/부동산팀



전재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

ESG 자문그룹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금융그룹



김인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61
E : kij@draju.com

중대재해 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draju.com

기업법무그룹



이승택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91
E : stlee@draju.com